## 시설물사용관리규정

제정: 2011.06.01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17.05.01

개정: 2020.03.01

개정: 2021.12.01

개정: 2022.10.01

개정: 2023.10.16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 이라 한다)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1.11.22., 2020.03.01.〉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에서 "시설물"이라 함은 각 건물, 민송체육관, 도서관, 생활관, 운동장 등 본 대학교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- 제3조(의무)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,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>
- 제4조(시설물 사용 및 관리부서) ①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 책임은 그 시설물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진다. 다만, 외부단체에서 본 대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승인 관련 문서를 사무처 사무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 2023.10.16.〉
  - ② 각 시설물의 증·개축과 유지,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관리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- 제5조(금지 및 제한사항) ①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, 훼손 방지를 위하여 본 조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② 생활관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실습과 연구,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무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7.05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  - ③ 생활관 식당, 연구관 식당, 학과별 조리실습실 이외의 장소에서는 취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④ 시설물 사용 기간은 야간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실습과 연구,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무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

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- 제6조(시설물대여) 본 대학교의 시설물을 대여할 때는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여 하되 시설의 파손 또는 오손을 대비하여 주최 측의 대표자와 실비 변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03.01.>
- 제7조(대여의 제한) ① 본 대학교의 시설물은 순수교육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외부단체 대여는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② 외부 단체에서 본 대학교 시설물 사용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사용 14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사용허가는 사무처 사무팀에서 해당 부서 및 해당 학과와 사전 협조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허가한다. 〈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〉
- 제8조(사용료) 외부단체에서 본 대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. 2021.12.01>
- 제9조(사용료 납부) ①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본 대학교 자체 기준에 의한다.
  - ② 사용료는 사용 3일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0조(외부사용자의 시설사용 규칙) ①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  - ②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시간과 정원을 준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③ 각종 쓰레기 발생 시 자체반출을 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④ 전기시설 및 수도 이용 시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⑤ 제반 시설물 및 각종 용구는 사전협의 없이 임의이동 및 관외로 반출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⑥ 시설물 사용 도중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 단체에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  - ⑦ 기타 관리상 필요한 규칙을 준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제11조(사용거절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행사 또는 시설물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다.
  - 1. 제10조를 위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<개정 2021.12.01.>
  - 2. 기타 본 대학교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<개정 2020.03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대학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 <개정:2020.03.01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